

1. 개정이유

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·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620호, 2026. 5. 12. 공포, 2026. 11. 13. 시행)됨에 따라, 산림복지전문업 휴업·폐업 신고 방법·서류 규정 및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관련 제출 서류 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산림복지전문업 휴업·폐업 신고 방법·서류 규정(안 제11조의4)

- 산림복지전문업 휴업·폐업 신고 시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하여 한 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
- 휴업한 등록자가 영업재개 신고 시 등록증 반환

나. 지도·명령 및 조사 주체에 ‘통합특별시장’ 포함(안 제17조)

- 「전남광주통합특별법」 시행('26.7.1.)에 따른 후속조치

다. 산림복지지구 지정·변경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규정(안 제18조)

- 신청서 및 첨부서류(조성방향 개요서, 위치도, 구역도, 현장 사진)

라.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관련 제출 서류 변경(안 제18조의2)

-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4(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·폐업·영업재개 등 신고) ① 법 제2

2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·폐업·영업재개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첨부(산림복지전문업을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영업재개를 신고하면 즉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8조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

계획 승인신청서에”를 “수립하려는 경우에는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,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)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산림복지지구 조성방향 개요서
2. 위치도(1/25,000), 구역도(1/25,000)
3. 현장 사진

제18조의2(중전의 제18조)의 제목 “(조성계획의 승인)”을 “(조성계획의 수립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의2호서식 및 제11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은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산림복지전문업

폐업

휴업

영업재개

휴업기간연장

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5일
신고인	법인명(상호명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	
	주소	(전화번호:)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	
	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	등록번호		
신고 내용	폐업 연월일			
	휴업기간 또는 영업재개 연월일			
	사유			
등록증 분실사유				

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지전문업의

폐업

휴업

영업재개

휴업기간연장

을(를) 신고합니다.

년

월

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(산림복지전문업을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,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산림복지지구 [] 지정 [] 변경지정

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0일
산림복지지구명칭				
신청인	기관명			
	부서명			
	전화번호 전자우편	실무담당자 성명		
소재지		구역 면적		

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지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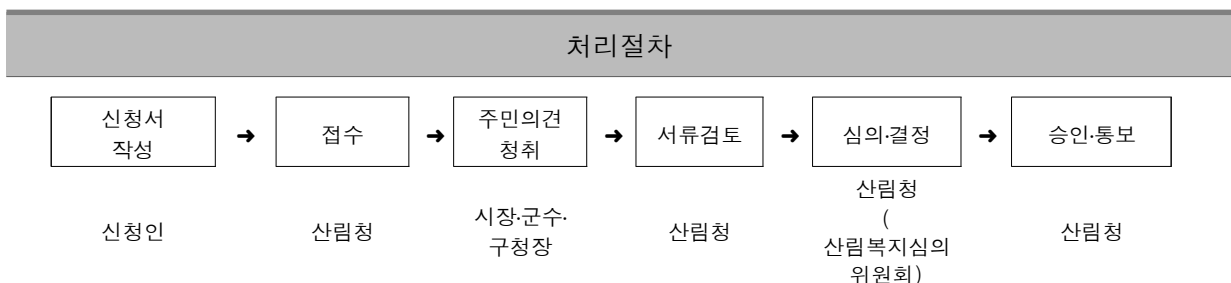
[] 지정
[]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산림복지지구 조성방향 개요서 2. 위치도(1/25,000), 구역도(1/25,000) 3. 현장 사진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4(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 · 폐업 · 영업재개 등 신고)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 · 폐업 · 영업재개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첨부(산림복지전문업을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.</u> <u>② 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영업재개를 신고하면 즉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.</u>
제17조(지도 · 명령 및 조사) ① 지방산림청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,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</u>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운영실태, 등록기준의 유지 여부 등에	제17조(지도 · 명령 및 조사) ① --- ----- --- <u>특별시장 · 통합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

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~ 5. (생략)

6. 법 제34조에 따른 타당성조사

결과

<신설>

----- 제출해야 -----.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8조(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) 영
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지
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
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청
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
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산림복지지구 조성방향 개요서

2. 위치도(1/25,000), 구역도(1/25,000)

3. 현장 사진